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4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이개호·박지원·박 정
정준호·임오경·조인철
정진욱·전진숙·문금주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실행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에서의 선서·증언 거부 및 위증(허위 진술)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경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중처벌)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본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문의”를 “각 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u>자</u> , <u>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언이나 감정인은</u>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 ----- ----- <u>자</u> <u>는</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u>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 ----- ----- -----.
<u><신설></u>	1. <u>증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u>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 ----- -----.
---	---